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6444호, 2019. 8. 20. 공포 · 시행)으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환부대상이 확대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회복대상재산, 피해회복금 등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 환부절차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부절차 개시규정 신설(안 제3조)
-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검사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고 있음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 환부청구를 하도록 하는 등 환부청구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항)
- 환부해야할 범죄피해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기존에 신청하였던 환부대상자에게 추가로 환부할 근거규정 신설(안 제9조)
- 검사의 환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환부 청구인이 일정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근거규정 신설(안 제11조)
- 본 시행령에 의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대검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복대상재산’이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
2. ‘피해자등’이란 환부대상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받은 자와 그의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3. ‘피해인정재산’이란 피해자등의 범죄피해재산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재산 반환액 및 손해배상 지급액을 공제하여 검사가 환부를 결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통지·공고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등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며, 피해인정재산을 기초로 제8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5. ‘환부대상 범죄행위’란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범죄로서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3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의 개시 등)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복대상재산의 추가 보관가능성, 가액, 환가 필요성 등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는 회복대상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 받은 집행재산 등을 포함한다)이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에 그 재산의 성질, 권리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환가(換價) 또는 징수하여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9조(추가지급) 검사는 피해자등에게 피해회복금을 지급한 후, 당해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새롭게 보관하게 된 경우 피해자등에게 이미 지급된 피해회복금이 피해인정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제8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피해회복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제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결정에 불복하는

환부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2.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

3.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고, 일부 기각한다는 결정

4.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

③ 검찰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을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를 개시한”으로, “지체 없이”를 “신속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청구)”를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자등은”을 “피해자

등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범죄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여부”를 “여부,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

③ 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부패범죄의 피해자가”를 “제1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함에 있어서 환부대상 범죄행위의 피해자등이”로, “청구된 범죄피해재산”을 “결정에 의해 인정된 각 피해자등의 피해인정재산”으로, “피해자의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등의 피해인정재산”으로, “환부하여야”를 “피해회복금을 산정하여 환부하여야”로 한다.

제11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검찰청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설

치·운영한다.

②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담당하는 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정 사항
2. 제10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
3. 기타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청이 있어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영에 의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금전 보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還付)의 대상이 되는 것(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 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이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에 그 재산의 성질, 권리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환가(換價) 또는 징수하여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복대상재산’이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 2. ‘피해자등’이란 환부대상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받은 자와 그의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3. ‘피해인정재산’이란 피해자등의 범죄피해재산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재산 반환액 및 손해배상 지급액을 공제하여 검사가 환부를 결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통지·공고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등에게 실제 지급되는

<신 설>

금전을 말하며, 피해인정재산을 기초로 제8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5. ‘환부대상 범죄행위’란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범죄로서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3조(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의 개시 등)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복대상재산의 추가 보관가능성, 가액, 환가 필요성 등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는 회복대상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 등을 포함한다)이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에 그 재산의 성질, 권리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제3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에서 법 제6조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것(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 받은 집행재산등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가 또는 징수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하 “회복대상재산”이라 한다)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5조에 따라 환부를 청구하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환가(換價) 또는 징수하여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통지 및 공고) ① -----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를 개시한 -----
----- 신속하게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

여야 하는 기간

② (생략)

제5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청구)

①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으려는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자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3. (생략)

<신 설>

제6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환부 청구를 받은 검사는 신속하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청구)

① -----
--- 피해자등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① 제6조-----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5조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제7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부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 같은 부패범죄의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보관하고 있는 회복대상재산만으로는 환부 청구된 범죄피해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피해자의 범죄피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 여부, 피해 인정재산 및 그 가액-----
-----.

② ----- 제6조-----
-----.

1. ~ 3. (현행과 같음)

4.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

③ 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① ----- 제7조-----

-----.

② 제1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함에 있어서 환부대상 범죄행위의 피해자등이 ----- 결정에 의해 인정된 각 피해자등의 피해인정재산-- 피해자등의 피해인정재산-----
--- 피해회복금을 산정하여 환

<신 설>

제8조 · 제9조 (생략)

<신 설>

부하여야 -----.

제9조(추가지급) 검사는 피해자등에게 피해회복금을 지급한 후, 당해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새롭게 보관하게 된 경우 피해자등에게 이미 지급된 피해회복금이 피해 인정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제8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피해회복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 제13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이의신청) ① 제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결정에 불복하는 환부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범죄피해재산환부 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회복대상

<신 설>

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2.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

3.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고, 일부 기각한다는 결정

4.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

③ 검찰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검찰청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담당하는 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정 사항

<u><신 설></u>	2. 제10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 3. 기타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청이 있어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영에 의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에 필요 한 사항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 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국제형사과	
연 락 처	(02) 2110 - 3828